

포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

2011년 10월 27일 제정
2011년 12월 7일 개정
2015년 1월 16일 개정
2017년 4월 27일 개정
2018년 10월 24일 개정
2024년 4월 24일 개정

제1조 (목적) 본 학회 운영규정 제2장 위원회 및 분과활동, 제6조 포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포상에 관련된 추천 및 수상관련 세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포상위원장의 역할) 포상위원장은 위원들을 회장에게 추천하고 위원회 소집, 회의 주재, 수상자 추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총회에서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한다. (신설, 2015.1.16)

제3조 (포상의 종류)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 및 대외활동에 있어서 뚜렷한 업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포상을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 포상위원회 내부기준으로 정한다.

- 가. 학술상: 학문적 업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매년 정기총회에 수여한다.
- 나. 두진 우주과학자상: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난 박사학위 후 15년 이내의 회원에게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- 다. 신진 우주과학자상: 우주과학회 회원으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내의 회원에게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- 라. 에스이랩 상: 학회 발전에 기여한 학위과정 회원들에게 수여한다.
- 마. 공로상: 학회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.
- 바. 특별상: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업적이 뛰어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.
- 사. 우수졸업생 한국우주과학회장상: 국내 우주과학관련 학과에서 추천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여한다.

제4조 (대외 추천요령) 대외에서 요청받는 포상에 대한 후보자 선정의 경우는,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여 전체 회원에게 이 내용을 공지하며, 적절한 형태의 추천형식에 따라 추천을 받는다. 포상위원회에서 별도의 추천을 할 수 있다. 포상위원회에서는 이들 후보자 중에서 해당자를 선정하며, 회장이 결정한다.

제5조 (기타 사항) 선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포상의 경우는 그 특성에 따라 수상자 혹은 후보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, 회장이 포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다.

제6조 (내부기준) 포상위원회 세부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기준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(신설, 2015.1.16)

제7조 (운영규정 개폐)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(신설, 2015.1.16)

부 칙 (시행일)

1.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